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경(안 제2조, 제3조, 별표)

- 1)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진료 실적을 확보하도록 상대평가 세부기준을 강화함.
- 2)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강화함.
- 3) 「의료법」 제58조의3 제4항이 같은 조 제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적용함.

나. 평가업무 위탁기관 규정정비(안 제6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제3호가목”을 “제3호가목, 제3호사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표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을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인력 및 중환자실병상,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별표 제4호 가목 중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34 이상”으로 하고, “100분의 14 이하”를 “100분의 12 이하”로 변경한다.

별표 제4호 나목 중 “100분의 11 이하”를 “100분의 7 이하”로 변경한다.

별표 제4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중증질환 진료 및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체계를 유도하고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진료실적을 갖출 것

별표 제5호 가목 중 “법 제58조의3제4항”을 “법 제58조의3제2항”으로 변경한다.

별표 비고 중 “제5호나목”을 “제3호사목, 제4호다목 및 제5호나목”으로 변경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관한 특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충족해야 하고,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제3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① ~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 제4호 및 제5호나목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제3호가목, 제3호사목----- ----- ----- ----- ----- ----- -----.
제6조(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6조(평가업무의 위탁) ① ----- ----- ----- ----- ----- ----- ----- ----- ----- -----.
	<삭 제>

<u>2.</u> ~ <u>4.</u> (생략) ② (생략)	<u>1.</u> ~ <u>3.</u>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별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제2조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3. 인력·시설·장비 등 가.~바. (생략) <u><신설></u>	3. ----- 가.~바. (현행과 동일) <u>사.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u> <u>등을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인</u> <u>력 및 중환자실병상, 음압격리병상</u> <u>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u> <u>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u>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의 구성 비율 가.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 안 다음 표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 자의 <u>100분의 30 이상</u> 이고, 단순 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의 비율은 <u>100분의 14 이하</u> 일 것 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 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 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 한 전체 외래환자의 <u>100분의 11</u> <u>이하</u> 일 것 <u><신설></u>	4. ----- ---- 가. ----- ----- ----- ----- ----- <u>100분의 34 이상</u> --, ---- ----- ----- <u>100분의 12 이하</u> ----- 나. ----- ----- ----- ----- ----- <u>100분의 7</u> <u>이하</u> ---- <u>다. 중증질환 진료 및 경증환자의</u>

현행	개정안
<u>다.</u> 가목의 입원환자 수와 나목의 외래환자 수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5. 의료서비스 수준 가. <u>법 제58조의3제4항</u>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나. (생략) 비고: <u>제5호나목</u>의 기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u>병의원 회송체계를 유도하고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진료실적을 갖출 것</u> <u>라.</u> ----- ----- ----- ----- ----- ----- ----- 5. ----- 가. <u>법 제58조의3제2항</u>----- ----- 나. (현행과 같음) 비고: <u>제3호사목, 제4호다목 및 제5호나목</u>의 ----- -----